공 연 장 대 관 내 규

제정 2000. 9. 1
개정 2004. 1. 1
개정 2004. 2. 1
개정 2004. 3. 8
개정 2005. 12. 1
개정 2006. 4. 10
개정 2006. 12. 29
개정 2007. 9. 4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09. 4. 23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9. 8
개정 2013. 1. 1
개정 2013. 3. 26
개정 2013. 6. 5
개정 2014. 4. 25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8. 18
개정 2015. 9. 3
개정 2015. 10. 15
개정 2017. 4. 2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02
개정 2018. 11. 12
개정 2019. 1 . 1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1. 20
개정 2022. 12. 26
개정 2023. 07. 21
개정 2023. 11. 01
개정 2024. 02. 26
개정 2024. 05. 02
개정 2024. 10. 11
개정 2025. 6.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S씨어터)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12.17, 2017.12.26.)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의 대상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의 범위는 회관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3조(대관신청) 기본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은 연 2회 이내로 하고, 신청기간은 매년 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회관이 인정하는 경우 2, 3년 후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 대관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9.4)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및 수시대관 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1.9.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풀에서 회관이 위촉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1.9.8, 2015.8.18)

⑤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대관 심사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되 장르별 대관 신청현황에 따른 외부심사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내부심사위원은 각 예술단장, 소관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사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수시대관은 4명 이상의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8., 2014.4.25., 2015.8.18., 2017.12.26., 2020.12.30., 2022.1.20.)

⑥ 심사방법은 평가점수로 심사하며 평가점수는 방침으로 정하되 체임버홀은 승인가부제로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을 신청할 경우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20.12.30., 2025.6.23.)

⑦ 심사위원이 심사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하거나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⑧ 대관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장애예술인 단체가 동 규정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감면 대상 및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대관료의 50% 이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6.23.)

제5조(일정경합 시 결정기준)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시스템에서 “공연장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② 기타 기재사항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제7조(대관신청 공고) ① 정기 및 수시 대관신청 공고는 회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② 삭제(2014.4.25.)

③ 대관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은 정기대관은 10일 이상, 수시대관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8조 (대관신청제한) 대관규정 제11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회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9조(대관승인·변경·취소) ① 사장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그 심사결과를 접수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9.4, 2014.4.25, 2015.8.18)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발송된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 납부 후 회관과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관계약” 체결 이후 승인받은 일정과 내용의 변경은 불가하다. 단, 대관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관시스템에서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작

성한 후 회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8, 2006.12.29, 2014.4.25., 2015.8.18., 2024.10.11.)

1. 내용변경(공연명, 출연진, 공연 내용 등)

승인 받은 내용(공연명, 출연진, 공연 내용 등)에서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해당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일 경우 승인되지 아니한다.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시스템에서 부대설비 사용 신청후 입장권 검인 이전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입장권검인신청이 불가하다. 기납부한 부대설비사용료 외 추가 발생된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시스템을 통해 최종사용내역을 상호확인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시에는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9.4, 2011.9.8, 2014.12.24, 2015.8.18, 2017.4.21)

④ 사용자는 회관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① 회관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4.25., 2015.8.18., 2020.12.30.)

1.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개정 2017.12.26.)

가. 공연대관 (개정 2020.12.30)

1)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되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연시간은 중간휴식 포함하여 최대 3시간으로 한다. (2020.12.30.)

2) 공연 시작 전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공연대관 최대 5 시간 안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연대관이 최대 5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 이때 공연대관 초과비용은 30 분 단위로 부과한다.

4) 1 일 다 회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차 사이에 최소 1 시간 30 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정부 행사, 콩쿨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오전 9 시부터 공연시작이 가능하다. 이에 한 해 준비대관 등이 오전 9 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철야대관료에 준해 부과한다.

나. 준비 및 철수대관 (개정 2006.12.29., 2020.12.30.)

1) 오전 9 시~오후 10 시 내에서 사용가능하다. (신설 2020.12.30.)

2) 사용시간: 1 회당 4 시간 사용가능하고 이후 초과되는 시간은 30 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30.)

3) 철야시간대 (오후 11 시 ~ 오전 9 시)에는 사전 대관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30.)

4) 9 시 공연대관이 승인된 정부행사 등에 한하여 오전 7 시 또는 8 시부터 준비대관 신청가능하며 대관료는 철야준비대관에 준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0.12.30.)

2. 체임버홀 (개정 2015.8.18., 2020.12.30.)

가. 공연대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로 하며 공연시간은 3시간(인터미션 포함)으로 한다. 공연대관시간은 최대 5시간 내에서 공연 전 준비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12.30.)

나. 준비 및 철수대관: 공연 준비대관은 4시간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사전연습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연습 일정을 협의할 때는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을 우선으로 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하다. 조율 시간은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내에서 사용한다. (신설 2020.12.30.)

다. 점심 (정오~오후 1시) 1시간, 저녁 (오후 5시~오후 6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대관 및 무대사용이 불가하다.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주말, 공휴일, 1일 다회 공연, 마티네 공연의 경우 회관과 협의 하에 초과사용료 없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② 삭제(2008.3.26)

③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준비·리허설 및 철수를 위한 초과 사용료는 30분 단위로 부과한다. 오전 공연대관 승인 건이 오전 7시 ~ 오전 9시 준비대관하는 경우 철야준비대관료에 따라 청구한다. (개정 2014.4.25, 2015.8.18., 2017.12.26., 2020.12.30.)

④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평일 중 하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일 2회의 공연을 할 수 있다. 단 공연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의 경우 한해 평일 중 하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일 3회까지 할 수 있고 기타 공연시간은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⑤ 철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공연 준비 및 철수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3:00~02:00	02:00~09:00
철야준비	30분 공연대관료의 150%	30분 공연대관료의 200%
철야철수	30분 공연대관료	30분 공연대관료

철야준비 및 철야철수시 초과사용료는 사용시간대의 사용료를 30분 단위로 청구한다.(개정 2013. 3. 26, 2014.4.25., 2017.12.26., 2020.12.30.)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대관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4.25)

②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장기는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90일전까지, 체임버홀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대극장은 180일전까지,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전까지 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9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조기매표를 위한 입

장권 검인을 필요로 할 시에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9.4, 2011.9.8, 2014.12.24., 2017.12.26., 2018.11.12., 2020.12.30.)

③ 수시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사용료 100분의 4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90일전까지, 체임버홀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은 대극장은 180일전까지,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전까지 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90일전(체임버홀은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승인통보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90일,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기매표를 위한 입장권 검인을 필요로 할 시에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9.4, 2014.12.24, 2015.8.18, 2017.4.21., 2017.12.26., 2018.11.12., 2020.12.30.)

④ 대관 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 단체의 사정으로 납부기한 유예가 불가피할 경우는 사전 승인 하에 연기할 수 있다. 이 때 각 회당 7일 연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상황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지침 등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을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⑤부대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3., 2015.10.15., 2020.12.30. 2022.1.20.)

⑥ 국내창작자의 작품이라 함은 제작자 및 연출, 작가, 음악 등 주요 제작진이 한국인이며, 저작권을 국내 신청회사(신청인)이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작품의 초연과 재공연작 여부는 관계없다.
(개정 2013.3.26)

⑦부속시설(귀빈실,VIP룸)을 사용할 경우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용료를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5, 개정 2014.12.24, 2015.8.18)

⑧대극장 로비 홍보부스를 사용할 경우 대관내규 제11조②,③항 대관자에 한해 부대설비사용신청서 (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5, 개정 2014.12.24)

⑨대관계약 체결 후 추가 대관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연시작 1일전까지 추가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연 중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공연종료 후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24, 2015.8.18)

⑩공연취소에 따른 부대설비사용료 반환은 대관규정 제9조 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4.)

⑪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 또는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처리는 '공동주최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단, 공익적·비상업적 사업의 경우는 수입금 전액을 행사 주관하는 공동주최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⑫제11조 ②,③,④,⑦,⑨항에 따르는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납기일로 한다.(신설 2020.12.30.)

제12조(문예진흥기금) ① 삭제(2004.2.1)

② 삭제(2004.2.1)

제13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회관과 사전협의하여 회관의 세종문화티켓 시스템 및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회관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1, 2006.4.10, 2006.12.29, 2014.12.24)

③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장권 검인을 위해서는 대관료 전액과 부대설비사용료를 납부한 후, 공연 30일전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통해 입장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검인을 원할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통해 검인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4.12.24., 2015.8.18., 2025.6.23.)

⑤ 입장권 및 교환권은 회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과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6.4.10)

⑥ 대관계약 후 기본 공연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30일전까지 확정된 공연정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정보 미등록시에는 입장권 검인이 불가하다.(신설 2014.4.25)

⑦ 사용자가 회관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가 있을 경우 회관은 그 매입채무를 상계처리 후 티켓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입채무가 티켓 판매대금보다 많을 경우 회관은 티켓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4.12.24)

⑧ 회관은 사용자의 사용료 환급금(대관료, 부대설비 사용료 등)에서 사용료(티켓판매 수수료 등)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거나, 산출된 사용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경우 회관은 별도로 사용료를 청구한다.(신설 2014.12.24)

제14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세종문화티켓 위탁판매 및 발행약관에 따른다.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개정 2006.12.29, 2014.12.24, 2017.4.21)

② 삭제(2006.12.29)

③ 사용자는 회관의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며, 할인율은 회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④ 사용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 발권 처리된 공연티켓 예매정보(공연명·일시·장소, 예매·취소 일시·금액, 예매자 연령·성별 등)를 제공·활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4.21)

제15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회관이 주최하는 종합 스탭회의에 관련 스탭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회관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

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며,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 및 출연진 변경, 취소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4.12.24 2015.8.18)

③ 회관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 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한다.(개정 2006.12.29. 2024.2.00)

1. 대극장(총22매) : 1층 B열 95번~96번, 155번~156번, C열 89번~92번, 109번~112번, 119~120번, D열 85번~88번, 2층 D열 1번-4번 (개정 2004.1.1, 2005.12.1, 2006.4.10, 2006.12.29., 2007.9.4., 2024.03.00.)
2. 세종M씨어터(총8매) : 1층 6열 7번~10번, 2층 1열 1번~4번 (8매)(개정 2007.12.17)
3. 세종체임버홀(총6매) : 1층 7열 1~2, 24~25, 1층 8열 9~10(신설 2006.12.29.)
4. 세종S씨어터(총4매/총6매): 1층 3열 1번~2번, 2층 1열 1번~2번(스탠딩 공연일 경우 2층 5열 19번~20번을 추가 유보) 단, 작품 특성에 따른 객석 변형 시 회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4매(스탠딩공연 총6매)를 유보한다.(개정 2018.11.12. 2024.5.2.)

④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20부, 회관보관용 프로그램 5부, 회관 보관용 포스터 5매)

⑤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회관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 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⑦ 공연장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첩할 수 없다. (단, 행사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첩은 회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첩하여야 한다)

⑧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06.12.29)

제16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회관 소재지로 한다.

제17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규정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4.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4. 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6. 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5년 정기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5년 정기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8.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15. 9. 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사용료) 별표 1.나.는 2015년 9월 3일(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하고, 별표 2.나.와 〈서식 제5호〉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사용료) 별표 2.가.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4.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0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료)는 대관사용일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존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료)는 대관사용일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존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1.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사용료)는 대관사용일 2022년 1월 20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존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사용료)는 대관사용일 2022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존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3. 07.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0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4.25, 2015.9.3., 2015.10.15., 2018.10.02., 2019.1.1., 2023.07.21., 2023.11.01., 2024.10.11., 2025.6.23.)

1. 부대설비사용료

가. 공통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08.3.26)

1) 사용료는 연습 및 공연에 적용한다.

2) 삭제(2008.3.26)

3) 인력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며, 1회 준비, 연습, 공연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3.1.1)

4) 사전 협의되어 외부로 반출된 부대설비의 임대료는 부대설비 사용료의 100%를 할증 적용한다.(덧마루, 의자, 보면대 등 기타 부대설비)

5) 삭제 (2013. 6. 5)

6) 장르구분(삭제 2009.4.23)

7) 7일 초과 8일부터 50%할인 적용(신설 2009.4.23, 개정 2014.4.25)

- 8일부터 추가되는 부대설비 항목도 포함 (* 표시는 할인적용 불가)

나. 부대설비(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09.4.23., 2010.12.30., 2013.1.1., 2013.6.5., 2014.4.25., 2015.9.3., 2018.10.02., 2019.1.1., 2022.01.01., 2023.07.21., 2024.10.11., 2025.6.23.)

(단위 : 원/vat별도)

시설	구 분	사용료	단위	비 고
피아노	그랜드	70,000	1일	1. 조율비 별도 2. 체임버홀 : 준비 및 리허설 (1회)포함
	업라이트	13,000	1일	
파이프 오르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중계	*TV중계 및 녹화	600,000	1회	공중파, 케이블 등 방송사에 적용
	*인터넷 중계	400,000	1회	극장 인프라 사용시 적용
	현장 중계 및 녹화	150,000	1일	
	*라디오 중계	100,000	1회	
조 명	Follow Spot	40,000	1일	1대 기준
	Fog Machine	5,000	1일	1대 기준, 포그액 사용자 부담
	Strobe	10,000	1일	1대 기준
	PAR 64	1,000	1일	1대 기준
	Source Four	5,000	1일	
	Grand MA Console	60,000	1일	
	Moving Light Spot	50,000	1일	
	Moving Light Wash	50,000	1일	

시설	구 분		사용료	단위	비 고
	LED Moving Light Wash		20,000	1일	
	LED Moving Light Beam		20,000	1일	
무 대 기 계	대극장 음향반사판		100,000	1일	
	오케스트라 피트		50,000	1일	공연을 위해 가동 시
	회 전 무 대		50,000	1일	
	이동 무대(수동)		25,000	1일	1. 1대 기준 2. 이동무대 운전인력 별도
	리프트		20,000	1일	
음 향	무 선 마 이 크		20,000	1일	건전지 사용자 부담
	이동용 음향시스템		250,000	1일	무대를 제외한 로비 등 회관 내 기타 장소 (유선 마이크 4개 포함)
	모니터 스피커		20,000	1일	1대 기준
	유선마이크	콘덴서	5,000원	1일	1대 기준 (Suspension Mic System 기본제공)
		다이내믹	2,000원	1일	
	SR (확성)	대극장	200,000	1일	효과용 시스템 포함
		M씨어터	150,000	1일	
		S씨어터	100,000	1일	
		체임버홀	50,000	1일	스피커 추가 설치 지원 시 2배적용(100,000원)
	*음향 효과 편집		5,000	1일	CUE 당
	믹싱콘솔		100,000	1일	C/R 믹싱콘솔 외 적용
	이펙터(잔향기)		4,000	1일	1대 기준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2,000	1일	
	이퀄라이저		2,000	1일	
	마이크 스탠드		1,000	1일	- 단,공연장 마이크 사용시 무상제공
	TV 모니터		10,000	1일	1대 기준 (고정설치 외에 추가설치에 적용)
	지휘자 카메라		20,000	1일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50,000	1일	FOH콘솔, 모니터콘솔, 녹음콘솔 등 사용시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2,000	1일	1set-pack,headset 기본설비 : 무대감독 데스크와 각 부속실 및 FOH 3set
	무선인터컴		5,000	1일	1대(pack,headset) 기준, 건전지 사용자 부담
녹음	*CDR, 오디오파일		30,000	1회	1. 녹음, 녹화, 재생에 필요한 매체 (CDR,DVD,파일저장매체 등)는 사용자 부담
	*Multi Recorder (DAW)		50,000	1회	
녹화	*영상 HD	S씨어터	120,000	1회	2. 1대 기준
		체임버홀	150,000		

시설	구 분		사용료	단위	비 고
	*영상 DVD(full) 자체		60,000	1회	
재생	CD, 오디오파일		10,000	1회	
	DVD, 영상파일		20,000	1회	
	Multi Recorder (DAW)		20,000	1회	
복사	*DVD, CD		10,000	1회	
영 상	빔 프로젝터(30,000안시)		600,000	1일	대극장
	빔 프로젝터(20,000안시)		400,000	1일	S씨어터
	빔 프로젝터(20,000안시)		400,000	1일	M씨어터
	빔 프로젝터(9,000안시)		90,000	1일	체임버홀
	빔 프로젝터(6,000안시)		60,000	1일	M씨어터 자막용(1대)
	미디어서버(와치아웃6)		100,000	1일	셋업, 운영 등 사용자 준비
	LCD모니터시스템		100,000	1일	3층용 빔프로젝터 포함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50,000	1회 언어당	1. 공연(행사)작품별 자막 오퍼레이터 사용자 부담 2. 다국어 제작시 언어당 적용
	*공연영상 제작, 편집		400,000	1파일 (5분이내)	1. 편집, 제작 관련 사전협의 필수 2. 작업소스 발주처 제공 3. 3파일 초과분(4파일)부터 50% 할인 적용 4. 요청작업에 따라 추가인력/장비, 별도제작/구입 지원 여부 협의 5. 저작권 관련 계약서 필요시 작성
무 대	덧마루(33㎡ 기준)		50,000	1일	1. 기본 33㎡ 50,000원 2. 추가 3.3㎡당 10,000원 별도 적용 3. 면적 계산시 33㎡ 미만은 33㎡으로 계산 4. 9.9㎡ 미만은 무료제공 5. 덧마루·조립식무대는 종류에 관계없이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조립식무대				
	무용용 고무판	대극장	400,000	1일	1 SET 기준.
		M씨어터	300,000	1일	
		S씨어터	300,000	1일	
	샤 막		20,000	1일	
	대극장이동스크린(25*13)		150,000	1일	
	M씨어터이동스크린(14*8)		100,000	1일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50,000	1일	1. 10set 미만 무상 제공 2. 기본 10~80set 기준임 3. 기본 외 추가 10set 당/10,000원

다. 기타 사용료(개정 2006. 12. 29, 2014.4.25., 2018.10.02., 2020.12.30. 2022.1.20., 2023.11.01., 2025.6.23.)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의상 및 소품 (대, 소도구)	1벌, 개(EA)	취득가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3	1. 5일 이하 대여시 1일당 - 취득가격의 100분의 5 2. 6일째부터 1일당대여료 - 취득가격의 100분의 3 3. 의상세탁비 별도
기업 홍보부스 (4m*2m*3m)	1일	1,000,000	1. 하우스매니저와 협의 후 극장별 적정 크기에 맞춰 설치 2. 사용료는 설치일 기준임
공연 홍보물 게시	1일	대극장-외부현수막(개별) 50,000/1일	1. 대관담당자와 협의 후 설치 2. 사용료는 설치일 기준임
		M씨어터-외부현수막 50,000/1일	
		M씨어터-내부패널 30,000/1일	

2. 기술스태프

가. 삭제(2018.10.02.)

나. 추가 지원 비용(신설 2006.12.29, 개정 2007.12.1, 2010.12.30, 2013.1.1., 2016.1.1., 2018.10.02)

구 분	장르	단위	사 용 료	비 고
감독료 또는 오퍼레이터 (무대/음향/조명/영상)	장르구분없음	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적용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2)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3) 삭제(2018.10.02) 4) 각 분야별 구분 적용 5) 순수음악회의 사용료 제외 (사회자, 협연자 부분 확성 등, 단,12ch이상 사용시 적용) 6) 일단위 기술료는 전년12월 공표되는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 적용
무대기술인력지원	1인	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적용	일단위 기술료는 전년12월 공표되는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 적용

다. 장르구분(신설 2010.12.30. 개정 2022.1.20.)

장 소	분류	비고
대극장	• 한국 전통예술(국악, 전통무용, 창, 판소리 등) • 클래식 · 발레 · 무용 · 오페라 • 뮤지컬 · 콘서트 • 행사(국가, 서울시, 시상식 등)	공연장 사용료 기준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 한국 전통예술(국악, 전통무용, 창, 판소리 등) • 공연(클래식 · 발레 · 무용 · 오페라 · 뮤지컬 · 콘서트) • 행사(국가, 서울시, 시상식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이용하며, 서면 제출 필요 시 하기의 서식을 활용한다.

〈서식 제1-1호〉(개정 2006.12.29, 2007.12.17., 2014.4.25., 2018.11.12.)

접수번호: 호

공 연 장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단체(공연자)명									
	주 소					우편번호				
	성명(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						
				전화번호(담당자)						
	E-mail			Fax						
	주 소									
공연부분	공연 (행사)명									
	시 설	대극장		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공연(행사) 주요내용	(서식 제1-2호:공연계획서첨부)								
대관구분 및 일자	대관구분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 )								
	공연횟수( )회 준비횟수 ( )회 철수횟수 ( )회 철야준비 횟수 ( )회 철야철수 횟수 ( )회									
	공연대관	20 . . ~ 20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준비대관	20 . . ~ 20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철수대관	20 . . ~ 20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공연종료 후 1시간 이내 철수 시 무료								
	철야준비대관	20 . . ~ 20 . .(회 / 일간) 23:00~ 02:00 /02:00~05:00 / 05:00~08:00								
	철야철수대관	20 . . ~ 20 . .(회 / 일간) 23:00~ 02:00 / 02:00~05:00 / 05:00~08:00								
	기타사항	* 23시 이후의 철야작업시 사용료가 발생됩니다.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 체임버홀 : 대관구분 및 일자 중 공연대관과 준비대관만 입력하십시오.

〈서식 제1-2호〉(개정 2014.4.25., 2025.6.23.)

접수번호: 호

공 연 (행사) 계 획 서

공연명 :		
대관기간 (준비 및 철수포함) :		
주 최 :	주 관 :	후 원:
공연(행사)소요시간 :	입장료예상가격 :	
공연(행사)시간 :	관람연령 : (0000년 이전 출생자)	
공 연 소 개		
공연프로그램		
출연진 및 주요 스태프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첨부 ① 공연줄거리 ② 공연 및 출연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삭제) ③ 기타공연계약서		

〈서식 제2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2014.12.24., 2018.11.12., 2020.12.30.)

대 관 승 인 서

승인번호 호

귀중

귀하의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공연장 정기대관(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용승인내용	공연(행사)명	
	장 소	
	공 연 일 자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회)
	공연준비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회)
	기본대관료	一金 (₩ -) 부가세 포함
	계 약 금	₩

1. 위 사항에 대하여 200 년 월 일 이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정기대관시 사용료의 20%, 수시대관은 40%입니다. 단, 수시대관시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 90일 이내, 체임버홀 60일 이내의 공연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승인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공연은 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대관승인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3. 계약체결 방문 시 대표자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 후 잔금은 대극장·M씨어터 공연 90일 전, 체임버홀은 60일 전,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물인 경우 대극장은 180일전까지,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장기공연에 한하여 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판매 개시는 잔금 및 부대설비사용료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서식 제3호〉 삭제 2014.4.25

〈서식 제4호〉

<table>
<tr><td colspan="5">대 관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대관승인(계약)번호</td><td colspan="3">제 호</td></tr>
<tr><td>단 체 명</td><td colspan="3"></td></tr>
<tr><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담당자 : 전화번호:</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3">(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공연(행사)일 자</td><td></td><td>장 소</td><td></td></tr>
<tr><td colspan="2">공 연 (행사)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3">(상세히 기재바랍니다)</td></tr>
<tr><td colspan="5">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귀 세종문화회관이 승인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td></tr>
</table>

〈서식 제5호〉 (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09.4.23, 2010.12.30. 2013.1.1, 2013.6.5, 2014.4.25., 2016.1.1., 2018.10.02., 2019.1.1., 2020.12.30. 2022.1.20., 2023.07.21., 2023.11.01., 2024.10.11., 2025.6.23.)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신청인	단 체 (공연자)명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번호	
	공연명		공연장소			
	주 소					
대관기간	20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공연장르	
일자	준비		연습	공연		종료

부대설비 내역 및 사용료 (원, VAT별도)

시설	구 분	사용료	신청수량	사용수량	횟수	금액	단위	비 고
부대설비 사용료 합계								
피아노	그랜드	70,000					1일	1. 조율비 별도 2. 체임버홀 : 준비 및 리허설 (1회)포함
	업라이트	13,000					1일	
파이프 오르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중계	*TV중계 및 녹화	600,000					1회	공중파, 케이블 등 방송사에 적용
	*인터넷 중계	400,000					1회	극장 인프라 사용시 적용
	현장 중계 및 녹화	150,000					1일	
	*라디오 중계	100,000					1회	
조 명	Follow Spot	40,000					1일	1대 기준
	Fog Machine	5,000					1일	1대 기준, 포그액 사용자 부담
	Strobe	10,000					1일	1대 기준
	PAR 64	1,000					1일	1대 기준
	Source Four	5,000					1일	
	Grand MA Console	60,000					1일	
	Moving Light Spot	50,000					1일	
	Moving Light Wash	50,000					1일	

	LED Moving Light Wash		20,000				1일	
	LED Moving Light Beam		20,000				1일	
무 대 기 계	대극장음향반사판		100,000				1일	
	오케스트라 피트		50,000				1일	공연을 위해 가동 시
	회 전 무 대		50,000				1일	
	이동 무대(수동)		25,000				1일	1. 1대 기준 2. 이동무대 운전인력 별도
	리프트		20,000				1일	
음 향	무 선 마 이 크		20,000				1일	건전지 사용자 부담
	이동용 음향시스템		250,000				1일	무대를 제외한 로비 등 회관 내 기타 장소 (유선 마이크 4개 포함)
	모니터 스피커		20,000				1일	1대 기준
	유선마이크	콘덴서	5,000				1일	1대 기준 (Suspension Mic System 기본제공)
		다이내믹	2,000				1일	
	SR (확성)	대극장	200,000				1일	효과용 시스템 포함
		M씨어터	150,000				1일	
		S씨어터	100,000				1일	
		체임버홀	50,000				1일	스피커 추가 설치 지원 시 2배적용(100,000원)
	*음향 효과 편집		5,000				1일	CUE 당
	믹싱콘솔		100,000				1일	C/R 믹싱콘솔 외 적용
	이펙터(잔향기)		4,000				1일	1대 기준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2,000				1일	
	이퀄라이저		2,000				1일	
	마이크 스탠드		1,000				1일	- 단,공연장 마이크 사용시 무상제공
	TV 모니터		10,000				1일	1대 기준 (고정설치 외에 추가설치에 적용)
	지휘자 카메라		20,000				1일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50,000				1일	FOH콘솔, 모니터콘솔, 녹음콘솔 등 사용시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2,000				1일	1set-pack,headset 기본설비 : 무대감독 데스크와 각 부속실 및 FOH 3set
	무선인터컴		5,000				1일	1대(pack,headset) 기준. 건전지 사용자 부담
녹음	*CDR, 오디오파일		30,000				1회	1. 녹음, 녹화, 재생에 필요한 매체 (CDR,DVD,파일저장매체 등)는 사용자 부담 2. 1대 기준
	*Multi Recorder (DAW)		50,000				1회	
녹화	*영상 HD	S씨어터	120,000				1회	
		체임버홀	150,000					
	*영상 DVD(full) 자체		60,000				1회	
재생	CD, 오디오파일		10,000				1회	
	DVD, 영상파일		20,000				1회	
	Multi Recorder (DAW)		20,000				1회	
복사	*DVD, CD		10,000				1회	
영 상	빔 프로젝터(30,000안시)		600,000				1일	대극장
	빔 프로젝터(20,000안시)		400,000				1일	S씨어터
	빔 프로젝터(20,000안시)		400,000				1일	M씨어터

	빔 프로젝터(9,000안시)		90,000					1일	체임버홀
	빔 프로젝터(6,000안시)		60,000					1일	M씨어터 자막용(1대)
	미디어서버(와치아웃6)		100,000					1일	셋업, 운영 등 사용자 준비
	LCD모니터시스템		100,000					1일	3층용 빔프로젝터 포함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50,000					1회 언어당	1. 공연(행사)작품별 자막 오퍼레이터 사용자 부담 2. 다국어 제작시 언어당 적용
	*공연영상 제작, 편집		400,000					1파일 (5분이내)	1. 편집, 제작 관련 사전협의 필수 2. 작업소스 발주처 제공 3. 3파일 초과분(4파일)부터 50% 할인 적용 4. 요청작업에 따라 추가인력/장비, 별도제작/구입 지원 여부 협의 5. 저작권 관련 계약서 필요시 작성
무 대	덧마루(33㎡ 기준)		50,000					1일	1. 기본 33㎡ 50,000원 2. 추가 3.3㎡당 10,000원 별도 적용 3. 면적 계산시 33㎡ 미만은 33㎡으로 계산 4. 9.9㎡ 미만은 무료제공 5. 덧마루·조립식무대는 종류와 관계없이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조립식무대								
	무용용 고무판	대극장	400,000					1일	1 SET 기준.
		M씨어터	300,000					1일	
		S씨어터	300,000					1일	
	샤 막		20,000					1일	
	대극장이동스크린(25*13)		150,000					1일	
	M씨어터이동스크린(14*8)		100,000					1일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50,000					1일	1. 10set 미만 무상 제공 2. 기본 10~80set 기준임 3. 기본 외 추가 10set 당/10,000원
기타	의상 및 소품							1벌	1. 5일 이하 대여시 1일당 - 취득가격의 100분의 5 2. 6일째부터 1일당대여료 - 취득가격의 100분의 3 3. 의상세탁비 별도
	기업 홍보부스 (4m*2m*3m 이내)		1,000,000					1일	1. 하우스매니저와 협의 후 극장별 적정크기에 맞춰 설치 2. 사용료는 3.3㎡ 기준임 3. 1일 2회 공연시 2회요금 부과

〈서식 제5-2호〉 삭제 2013.1.1.

〈서식 제6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2014.12.24., 2017.4.21., 2018.11.12., 2020.12.30. 2022.12.26. 2024.05.02., 2025.6.23.)

공연장 대관계약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과 대관자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1. 공 연 명 :
2. 공 연 장르 :
3. 대관 시설명 :
4. 대 관 기 간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일간) 공연총 회
   준비및연습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회)
   공 연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회)
   철 수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회)

제2조(사용료)

1. 대관료: 총 원(부가세 포함)

※공연 횟수, 대관 초과사용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자의 신청 및 실사용에 따라 별도 청구함.

2. “사용자”는 기 납부한 계약금 원 외에 잔액 원을 20 . .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사용료(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는 “회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기공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대극장 180일전,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전 1차 잔금 50% 납부하고, 2차 잔금 50%은 90일 전까지 납부)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관”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본 계약서 제8조(환불)를 따른다.

3. 티켓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회관”의 세종문화티켓 시스템과 “회관”이 지정한 티켓판매 대행사와 티켓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티켓판매위탁계약 체결 즉시 “사용자”의 티켓 판매 대행사에 대한 티켓판매 정산금 채권에 “회관”을 위하여 1순위 질권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제3자로 하여금 티켓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제3자가 티켓판매 정산금 채권을 “사용자”의 사용료 지급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 “회관”에게 1순위 질권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관”의 서면 동의 없이 티켓판매 정산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납사용료의 정산

“사용자”가 위 제2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용료 전액(추가사용료, 부대설비 사용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관”은 세종문화티켓 시스템을 통해 판매된 티켓판매대금에서 미납사용료를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티켓판매대행사로 하여금 티켓판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미납된 사용료를 “회관”에 납부하면 티켓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입장권의 발행)
1. 모든 입장권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회관”의 검인을 받은 후 전산발권을 하여야 한다.
2. 공연장 대관내규 제15조에 의해 공연장운영 및 진행을 위한 티켓으로 대극장 22매, 세종M씨어터 8매, 세종체임버홀 6매, 세종S씨어터 4매 (스탠딩 공연 6매)를 유보 한다.
3. “사용자”는 세종문화티켓 위탁판매 및 발행약관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티켓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 등을 위해 타 예매처의 예매정보를 “회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회관”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승인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변경 행위
3. 대관시설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제5조(회관의 의무) (신설)
1. “사용자”와의 대관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공간, 시설, 서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한다.
2. “사용자”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3. 공연 관객 및 공연 출연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및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1. 공공의 지원을 받는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는 자는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회관”과의 대관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의 직원 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회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VIP룸, 메세나룸, 로비 등 특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관”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회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공연장대관내규 제14조에 의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예매정보 제공 및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 및 정지명령)
“회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의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발송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대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각 호를 위반 하였을 때
4. 기타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삭제)

(삭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에 따른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방역조치로 공연좌석의 일부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회관"은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8조(배상책임)

1. "회관"은 "사용자"가 제7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9조(환불 및 위약금)

공연 및 대관의 취소가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회관"은 "사용자"에게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정에 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제7조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공연장의 객석 일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회관"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신설)
3. "사용자"의 취소 의사(서면)에 따라 공연을 취소할 경우 공연 개시일까지 잔여일에 따라 아래표에 준하여 반환 (신설)

가. 정기·수시대관의 경우(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해지시점 /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8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8일~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80%
15일~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 체임버홀 및 기타 공간 대관의 경우 위 표 대관기간 "1~7일"의 경우에 준함

나. 수시대관 중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회관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아래표에 따라 반환

공연장	대관기간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1일~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40%	
	8일~14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15일~2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반환 안함	
체임버홀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40%

다. 수시대관 승인통보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 90일이내,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 대관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사용료 중 50%를 반환

라.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대관사용료

4. "회관"측의 귀책사유로 대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관"은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일정에 대한 사용료 전액과 아래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 (신설)

가. 정기대관의 경우(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해지시점 /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4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50~20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10~26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7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20%	-
8일~14일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20%
15일~27일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납부한 계약금 중 60%

* 체임버홀 및 기타 공간 대관의 경우 위 표 대관기간 "1~7일"의 경우에 준함

나.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장	대관기간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1일~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60%	
	8일~14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70%	
	15일~2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8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100%	
체임버홀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80%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60%

제10조(적용규정)

1. 회관은 계약 체결시 사용자에게 대관규정 및 공연장대관내규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납부 방식, 환불 및 배상 등 대관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 본 계약은 관련법령의 일부조항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공연장 대관내규에 따르며, 분쟁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제11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회관”	“사용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상 호
사 장	대표자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주 소
101-82-06773	사업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서식 제7-1호〉 (신설 2006.12.29, 개정 2007.9.4, 2007.12.17, 2014.4.25., 2017.4.21., 2018.11.12. 2024.02.26. 2024.05.02.)

입장권 검인 요청서

◎ 공연개요

공 연 명	
공 연 일 자	
공 연 시 각	
공 연 장 소	
티켓오픈희망일	
할 인 적 용	· · · ※ 카드할인, 단체 할인 등 추가 할인내역이 있을시 모두 입력바랍니다.
유 보 석	1. 세종대극장(22석) : 1층 B열 95~ 96, 155~156, C열 89~92, 109~112, 119~120, D열 85~88, 2층 D열 1~4 2. 세종M씨어터(8석) : 1층 6열 7~10, 2층 1열 1~4 3. 세종S씨어터(4석/6석): 1층 3열 1~2, 5층 1열 1~2 (스탠딩공연 2열 19~20 추가 유보) 단, 작품 특성에 따른 객석 변형 시 회관과의 협의를 통해 좌석을 유보한다. 4. 세종체임버홀(6석) : 1층7열 1,2,24,25, 1층8열 9,10 .

◎ 검인요청매수

1. 유료석

좌석등급	금액	매수	세종 문화티켓	타예매처 (기획사)	횟수	총수량
소계						

2. 초대석(무료석)

좌석등급	금액	매수	세종 문화티켓	타예매처 (기획사)	횟수	총수량
소계						

3. 총 합

좌석매수	세종문화티켓 (유보석 포함)	타예매처	횟수

◎ 신청인정보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FAX	
휴 대 전 화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		
담당자 성명			

* 첨부 : 좌석배치도 등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서식 제7-2호〉(신설 2006.12.29, 개정 2007.12.17, 2014.4.25., 2017.4.21., 2018.11.12., 2024.05.02.)

입장권 변경 검인요청서

◎ 공연개요

공 연 명	
공 연 일 자	
공 연 시 각	
공 연 장 소	
변경검인요청매수	
할 인 적 용	· · · ※ 카드할인, 단체 할인 등 추가 할인내역이 있을시 모두 입력바랍니다.

◎ 검인변경 요청매수

1. 유료석

(급)석	금액	당초검인매수 (회당)	횟수	검인변경 매수 (회당)	변경결과	비고
소계						

※비고(좌석정보, 좌석판매형태, 가격정보, 시각 등 변경 내용 기입)

2. 초대석(무료석)

(급)석	금액	당초검인매수 (회당)	횟수	검인변경 매수 (회당)	변경결과	비고
소계						

3. 총 합

당초검인 매수 (회당)	검인변경 매수 (회당)

1. 세종대극장(22석) : 1층 B열 95~ 96, 155~156, C열 89~92, 109~112, 119~120,
D열 85~88, 2층 D열 1~4
2. 세종M씨어터(8석) : 1층 6열 7~10, 2층 1열 1~4
3. 세종S씨어터(4석/6석): 1층 3열 1~2, 2층 1열 1~2 (스탠딩공연 5열 19~20 추가 유보)
단, 작품 특성에 따른 객석 변형 시 회관과의 협의를 통해 좌석을 유보한다.
4. 세종체임버홀(6석) : 1층7열 1,2,24,25, 1층8열 9,10 .

◎ 신청인정보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FAX	
휴 대 전 화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		
담당자 성명			

* 첨부 : 좌석배치도 등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